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. 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소방관련 기구신설 및 인력확충, 한강·금강 수계관리담당 신설,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 기능보강, 오창과학산업단지 환경시설설치,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·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 □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332명 ⇒ 2,410명 (78명 증원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386명 ⇒ 1,400명 (14명 증원)
 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850명 ⇒ 914명 (64명 증원)
 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 없음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52명 (변동 없음)

## □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332명”을 “2,410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386명”을 “1,400명”으로 하며, 동조제2호중 “850명”을 “914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조 문 대비 표

현 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 정   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332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386명</u></p> <p>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<u>850명</u></p> <p>3. 내지 4 (생략)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.....</p> <p>..... <u>2,410명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1. .... : <u>1,400명</u></p> <p>2. ....</p> <p>..... : <u>914명</u></p> <p>3 내지 4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#### ○ 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- ⑤ (생략)

#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#### ○ 제21조 (정원의 규정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  1. 집행기관의 정원
  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 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- ② - ④ (생략)